

대학정책위원회 운영규정

전문제정 2019.09.16. 개정 2020.12.22. 개정 2022.03.04. 개정 2024.04.29.

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혜전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의 경영 방침을 세우기 위하여 대학정책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하고,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기능)

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① 대학발전을 위한 정책 검토 및 자문에 관한 사항
- ② 대학발전을 위한 구성원 의견수렴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
- ③ 대학 성과관리 및 성과지표 검토에 관한 사항 <개정 2020.12.22.>

제3조 (구성)

- ① 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한다.
-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이 겸임하고, 기획처장, 교무처장, 입학처장, 학생처장, 총무처장, 산학협력단장을 당연직으로 한다. <개정 2024.04.29.>

제3조 (임기)

- 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.
- ② 위원이 궐위 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5조 (위원장 등의 직무)

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

제6조 (회의)

-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-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.
-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대학 내 행정조직 및 그 밖의 기관의 책임자를 위원회에 배석시킬 수 있다.

제7조 (소위원회)

-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② 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8조 (간사)

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운영을 보조하기 위하여 기획처 기획팀장을 간사로 둔다. <개정 2022.03.04.>

제9조 (회의록 작성)

위원회는 회의의 일시, 장소, 발언요지,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·보존하여야 한다.

제10조 (경비 등 지원)

- ①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② 총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11조 (지침)

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12조 (운영세칙)

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.

부 칙(2019.09.16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9년 09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0.12.22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0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2.03.04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2년 03월 0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4.04.29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4년 04월 29일부터 시행한다.